## 文學碩士學位論文

『國朝續五禮儀』의 編纂과 왕권의 位相

2009年 2月

付金市立大學校 大學院國 史 學 科卓 信 希

SKIVERSITY ON SE H THILLIP T M A A A A A A

## 文學碩士學位論文

『國朝續五禮儀』의 編纂과 왕권의 位相

2009年 2月

付き市立大學校 大學院 國 史 學 科 卓 信 希

# 『國朝續五禮儀』의 編纂과 왕권의 位相

指導教授 裵 祐 晟

이 論文을 文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12月 日

付金市立大學校 大學院國 史 學 科卓 信 希

# 卓信希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查委員長
 印

 審查委員
 印

2008年 12月 日

서울市立大學校 大學院

#### 【국문초록】

#### 『國朝續五禮儀』의 編纂과 王權의 位相

이 논문은 조선후기의 典禮書인『國朝續五禮儀』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영조의 편찬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조속오례의』는 성종대에 완성한『國朝五禮儀』를 기본으로 하여 영조대까지의 변화된 의례를 반영한 책이 다. 선행 연구는『국조속오례의』를 의례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쳤다. 이 논문에서는 『국조속오례의』를 다른 國典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국조속오례의』를 편찬한 영조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국조오례의』는 『經國大典』과 동등한 위상을 가진 國典이었다. 『국조오 례의』를 증수한 『국조속오례의』역시 동일한 위상을 지닌 국전으로 인식되었으 며, 국가의례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의례는 정치권력을 구현하는 한 형태이다. 『경국대전』과『국조오례의』는 모두 禮에 관한 규정을 실었다. 그러나 국왕의 의례에 관련된 조문은 『경국대 전』이 아니라 『국조오례의』에 실려 있다. 따라서 완전한 禮를 실행하기 위해서 는 두 책이 모두 필요했다. 그런 점에서 『속오례의』는 『속대전』과 상호보완적 인 관계에 있는 책이다. 『속대전』이 편찬되었을 때 새로운 국가의례서의 편찬은 필수적인 일이었다.

『국조속오례의』에는 주로 숙종대 이후의 의례가 실려 있는 『국조오례의』 와 달리 儀文을 기록할 때 典據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王大妃·大王大妃와 관련한 의례를 처음으로 다루었으며, 왕실 구성원들의 의례가 더욱 강화되었다.

『국조속오례의』의 구성은 주로 영조의 親臨儀禮가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특징이다. 국왕의 친림의례는 일반 의례와 달리 더 엄격하고 중요하였다. 친림의례는 신하들에게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동시에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영조는 자신이 행한 친림의례의 형식과 절차를 그대로 『국조속오례

의』에 반영함으로써 왕권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더 나아가 후대의 왕들에게 자신이 시행하였던 의례를 따르게 했다.

국가의례 중에서도 凶禮의 服制는 왕실 구성원들과 先代王의 관계를 명시하기 때문에 왕위 계승과 관련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국조속오례의』에 실려 있는 복제에 의하면, 경종과 영조는 부자의 관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영조는 경종이 아닌 숙종의 후계자를 자처하였으며, 그러한 자신의 의도를 새로운 국전인 『국조상례보편』을 통해 구현하였다.

『국조상례보편』은 『국조속오례의』와는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대왕대비 관련 복제를 없애는 대신, 왕대비가 왕비를 위해 朞年服을 입도록 규정하였다. 이 복제는 영조를 숙종의 嫡長子로 여긴 것이었다. 大喪(국왕의 상)과 小喪(왕세자의 상)의 복제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국왕과 왕세자가 嫡子・庶子인지長子・次子인지를 두고 정통성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차단했다.

주요어: 國朝續五禮儀, 國朝五禮儀, 國朝喪禮補編, 英祖, 正統性, 儀禮, 親臨儀禮, 五服, 服制, 經國大典, 續大典, 景宗, 肅宗

# - 목 차 -

제1장 머리말	1
제2장 『國朝續五禮儀』의 편찬과 위상	
제1절 『國朝續五禮儀』의 위상	5
제2절 『國朝五禮儀』와『國朝續五禮儀』의 관계	8
제3장 『國朝續五禮儀』의 편찬의도	
제1절 『國朝續五禮儀』의 구성과 내용	14
제2절 親臨儀禮 반영의 의미	18
제4장 英祖代 國家儀禮書와 복제문제	
제1절 『國朝續五禮儀』의 복제와 왕위계승	22
제2절 『國朝喪禮補編』과 정통성	25
제5장 맺음말	29
참고문헌	33
Abstract ·····	37

# - 그림 및 표 목차 -

<그림-1>	23
<	24
<蛋-2>	26
附 表	32

# 제1장 머리말

『國朝五禮儀』1)는 세종 때 편찬하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한 책이다. 이 책은 국가 儀禮의 근거가 되었다.2)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면 의례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의례의 기준도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례서인 『오례의』는 國典3)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수정할 수 없었다. 새로운 의례가 필요하거나 의례가 없어진 경우에는 受敎와 前例를 근거로 삼았다.

『오례의』와 『경국대전』은 영조 때 각각 『속오례의』와 『속대전』으로 증수되었다. 『속대전』에 대한 연구는 이미 198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지만4》 『속오례의』5)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6) 이영

<sup>1)</sup> 이하 『국조속오례의』는 『속오례의』로, 『국조오례의』는 『오례의』로 각각 약칭한 다. 다만 전거로 적을 때는 약칭하지 않는다. 五禮는 서명이 아닌 예제 자체를 가르킨 다

<sup>2)</sup> 이범직, 1991, 『한국중세예학사상연구 -오례를 중심으로-』. 일조각.

<sup>3)</sup> 國典의 사전적인 뜻은 "國家의 法典. 또는 나라의 고유 儀式이나 典禮"이다. 『영조실록』기사를 확인해 보면, 『경국대전』과 『오례의』를 지칭할 때 모두 國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용례를 따랐다. 그리고 國典에 종류에 따라 법전과 국가의례서로 구분하였다. 典禮書라는 단어가 있으나,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이 논문에서는 국가의례서로 풀어서 서술하였다.

<sup>4)</sup> 속대전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 연구 등이 있다.

연정열, 1988, 『續大典과 大典通編에 關한 一硏究 』「論文集」12, 漢城大學校. 홍순민, 1998, 「조선 후기 법전 편찬의 추이와 정치운영의 변동 」『한국문화』21.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정호훈, 2004, 「18세기 전반 탕평정치의 추진과 『속대전』의 편찬」『한국사연구』 127,한국사연구회.

김백철, 2007, 「조선후기 영조대『속대전』위상 재검토-「형전」편찬을 중심으로」 『역사학보』194, 역사학회.

김백철, 2008, 「조선후기 영조대 법전정비와 『속대전』의 편찬」 『역사와 현실』 68, 한국역사연구회.

<sup>5) 『</sup>속오례의』 찬집 이후 『國朝續五禮儀補』도 만들어진다. 『국조속오례의보』에는 『속오례의』가 편찬된 이후 새로 정립된 의례들을 수록하였다. 그러나 국왕에 관한 의례는 한 항목 뿐이고, 주로 왕세자와 왕세손에 관한 의례이다. 두 책이 같은 권위를 지녔더

춘은 조선후기 祀典과 국가제사를 분석하면서 『속오례의』의 편찬을 예제 정비 차원에서 간단히 다루었다.7) 임혜련은 조선 중·후기 왕실의 혼례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면서 『속오례의』를 거론했다.8) 김지영은 조선후기의 御駕行列에 관한 연 구에서 『속오례의』와 『春官通考』의 鹵簿와 班次圖를 자세하게 비교했다.9)

『속오례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 연구자는 조재모이다. 그는 실제 禮가 행해지는 동선을 분석하여 禮와 공간의 개념을 구체화 하고, 『오례의』를 따른 조선전기와 『속오례의』를 따른 조선후기가 공간 활용 면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밝혔다. 다만 의례의 의미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고, 용어를 엄밀하게 사용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10)

「考異」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선행연구의 중요한 한계로 지적되어야 한다.11) 현재 규장각에 남아있는 『오례의』와『속오례의』중에 「고

라도 국왕의 친림의례가 중심인 『속오례의』 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1744년(영조20)에 완성된 『속오례의』를 중심으로 분석하겠다.

<sup>6)</sup> 이현진, 2005,「『國朝五禮儀』와 『續五禮儀』의 편찬과 의의」『규장각 소장 왕실자 료 해제·해설집』4, 서울대학교 규장각.

<sup>7)</sup> 이영춘, 2002, 「조선후기 사전의 재편과 국가제사」『한국사연구』118, 한국사연구회.

<sup>8)</sup> 임혜련, 2003,「朝鮮 中·後期 왕의 혼례와 친영」『숙명한국사론』3, 淑明女大 韓國史 學科

<sup>9)</sup> 김지영, 2005, 「조선시대 典禮書를 통해 본 御駕行列의 변화」 『韓國學報』 120, 一 志社

<sup>10)</sup> 위 연구에서는 『속오례의』에 등장하는 용어에 대한 정리 없이 '대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속오례의』에 왕대비·대왕대비를 위한 의례는 있지만 대비를 위한 의례는 없다. 『속오례의』에서는 "대비"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착오로 인하여 『속오례의』목록을 정리할 때 존재하지 않는 大妃上尊號冊寶儀를 표에 첨부하는 실수를 범하였다(p.64 표 2-7).

또한 각 의례를 설명함에 있어서 공간에 지나치게 주목하여 지나친 해석을 하였다. 예를 들면, 親臨救蝕儀를 설명할 때 이 의례가 새로 수록된 이유를 의례 공간이 변화했기 때문으로 보았다.(p.65) 이 의례가 『속오례의』에 수록된 이유는 장소 뿐만 이 아니라 일식을 알리는 관원의 변화와 복식이 淺淡服으로 변화한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조재모, 2003, 「조선시대 궁궐의 의례운영과 건축형식」,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sup>11)</sup> 이현진은 〈奎 1022〉(『속오례의』)의「고이」를 『오례의』이후 『속오례의』이전에 成冊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속오례의』의 서문에 「고이」를 따로 만들었다는 것을 근 거로 『국조오례의』에도 역시 「고이」를 만들어 五禮儀체재로 묶어 만든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박정자 역시 비슷했다. (박정자, 1974,「國朝五禮儀와 그 續補編」『숙대사론』8집,淑明女子大學校 史學會.) 조재모는 내용상「고이」를 『속오례의』가 찬집될 때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전기의『국조오례의』

이」편 전체를 수록하고 있는 책은 〈奎 174〉,〈奎 175〉,〈奎 1022〉와 〈奎 1479〉 등이 있다.<sup>12)</sup> 이 중에서 『오례의』의 내용을 수록한 책이 〈奎 174〉,〈奎 175〉,〈奎 1022〉<sup>13)</sup>이고, 『속오례의』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奎 1479〉이다. 〈奎 1022〉(『오례의』)의 「고이」와 〈奎 1479〉(『속오례의』)의 「고이」는 내용상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고이」가 『오례의』와『속오례의』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고이」는 영조 때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凶禮考異에는 부묘 후 結 綵·歌謠 및 木奴婢제도의 폐지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는데,14) 이것들이 폐지 된 시점은 1744년(영조20) 8월 19일이다.15) 의례 공간이 바뀐 내용도 들어있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의례의 주공간은 경복궁에서 창덕궁 등으로 바뀌었다. 영조는 李德壽로 하여금 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게 하였다.16) 이후 그 결과는 『속오례 의』 序例考異에 반영되었다.17)

『오례의』에는 「고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반면, 『속오례의』에는"오례의

편찬 이후에도 考異편이 발간되었다.(규174참조)"라고 언급하고 <규174>의「고이」가『속오례의』에 함께 수록된 「고이」와 내용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조재모, 2005,「英·正祖代 國家儀禮 再整備와 宮闕建築 - 朝賀儀式을 中心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21권 12호, 대한건축학회 p.222, 각주47 참조.)

<sup>12) 「</sup>고이」 전체가 수록되지 않고 일부분만 파본으로 존재한다.

<sup>13) 〈</sup>奎 174〉〈奎 175〉〈奎 1022〉는 체제가 같고 모두『국조오례의』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수록된 「考異」는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 앞으로는 이 중에서 〈奎 1022〉를 가지고 설명하겠다.

<sup>〈</sup>奎 1022〉(『오례의』)는 6책으로 이루어져있고, 그중에서 「고이」는 1책에 수록되어 있다. 1책에는 「國朝五禮儀序」,「國朝五禮儀目錄」,「進國朝五禮儀箋」,「國朝五禮儀考異目錄」,「國朝五禮儀考異」,「國朝五禮儀卷之一(吉禮)」가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다. 나머지 5책에 2권 길례부터 8권 흉례까지 수록되어 있다.

<sup>14)</sup> 결채·가요의 폐지에 대해서는 "今上甲子 特命永罷"로 기록하고 있다. (『속오례의』「고이」흥례고이 治葬條) 목노비의 폐지에 대해서는 "今上甲子 以木奴婢 恐啓後日用殉之弊 特命革罷"라고 적었다. (『속오례의』「고이」흥례고이 遷奠儀)

<sup>15) 『</sup>승정원일기』 영조 20년 8월 19일 계해.

<sup>16) 『</sup>영조실록』 권53, 17년 5월 1일 갑자.

<sup>17) 『</sup>속오례의』권1,「고이」서례고이 중 車駕還宮條

에 가감을 할 수 없으므로 「고이」를 새로 만든다."는 내용이 있다.18) 따라서 『속오례의』와 『오례의』에 같은 내용의 「고이」가 있다면 「고이」는 『속오 례의』를 만들면서 함께 편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9)

선행 연구는 『속오례의』가 가진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의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국왕이 권력을 실현하고 드러내는 방식이 었다. 『경국대전』과『오례의』는 모두 禮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지만, 국왕에 관한 儀禮는 『오례의』에만 들어있다. 따라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의례를 실행하 기 위해서는 두 책이 모두 필요했다.

『속대전』과 『속오례의』의 관계는 『경국대전』과 『오례의』의 관계와 마찬가지였다. 『속오례의』는 『속대전』에서 규정하지 않은 왕의 의례를 명문화함으로써 『속대전』을 보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속대전』과 『속오례의』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다. 이것은 물론 『속오례의』에 대한 연구가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오례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영조가 행했던 일련의 국가 재정비 작업의 의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논문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속오례의』가 가진 국전으로서의 위상을 밝히고자 한다. 국왕의 권력은 대부분 의례를 통해 구현되었으며, 『속오례의』는 『오례의』를 계승한 국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국대전』과 『오례의』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속오례의』가 『속대전』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유추하고자 한다.

둘째 『속오례의』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 책에 담긴 영조의 의도를 확인하고 자 한다. 평소 영조는 의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繼志述事를 내걸고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다. 『속오례의』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와 같은 영조의 의도와

<sup>18) 『</sup>속오례의』「進箋」・「凡例」

<sup>19) 『</sup>오례의』의 내용을 담고 있는 〈奎 1022〉에 『속오례의』가 편찬될 때 만들어진「고이」가 수록되었다. 그 이유는 『속오례의』를 만든 이후 『오례의』를 다시 간행하면서 책을 구성할 때 변경된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 『속오례의』자 체에 이미 「고이」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서, 「고이」가 없어도 의례를 참고하는데 무방했다. 또한 「고이」가 『속오례의』를 만들 때 같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지 않으면「고이」내용만이 남아있는 결본이 겉표지에 "속오례의"라고 적혀 있는 책〈奎26624〉을 설명할 수 없다.

관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왕권의 정통성 문제와 관련한 규정들이 실제로 『속오례의』의 예제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속오례의』와 『국조상례보편』을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 제2장 『國朝五禮儀』의 편찬과 위상

#### 제1절『國朝五禮儀』의 위상

『오례의』는 모든 국가 의례의 기준이 되었다. 국왕과 신료들은 의례를 거행할 때마다 『오례의』의 존재를 항상 의식하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오례의』의 규정이 조선후기에 실제로 어떻게 관철되었는지를 飮福宴의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한다.

飮福宴은 보통 국가의 大祭를 마치고 난 뒤 膰肉과 술 등을 여러 官司에게 나누어주고, 국왕이 따로 종친·관료·享官을 위해 연회를 베푸는 것을 말한다. 『오례의』「嘉禮」飮福宴儀에는 祔廟 또는 親祭 후에 賀禮를 하고 음복연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sup>20)</sup> 그러나 영조는 景宗과 宣懿王后를 부묘한 뒤에도 음복연을 시행하지 않았다.<sup>21)</sup> 또한 종묘와 사직의 친제에서도 음복연을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영조의 명에도 불구하고 예조는 종묘와 사직의 親祭를 준비할 때마다 음복연의 시행여부를 끊임없이 문의했다.<sup>22)</sup> 그 근거는 물론 『오례의』의 규정이었다.

<sup>20) 『</sup>오례의』에서는 제사를 大祀, 中祀, 小祀, 祈告祭, 俗祭, 州縣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대사에는 종묘, 영년전과 사직에 지내는 제사가 포함된다.

<sup>22) 『</sup>승정원일기』 영조 16년 3월 3일 갑진.

又以禮曹言啓曰 宗廟夏享大祭親行事 已爲啓下矣 五禮儀 有大祀後陳賀訖 行飲福宴之文 而本曹謄錄 則每以近年以來 並爲停止, 爲辭 而有權停之命矣 今此親祭時 陳賀飲福宴等節 何以爲之 敢稟 傳曰 依近例爲之

<sup>1740</sup>년 이외에도 매년 음복연에 관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록 뿐 아니라 『속오례의』가 찬집되는 1744년에도 음복연 시행 여부를 묻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영조 17년 3월 11일 병자; 『승정원일기』영조 18년 3월 25일 갑신; 『승정원일기』영조 19년 3월 28일 임오;『승정원일기』영조 20년 3월 28일 병오.)

1744년(영조20)에 예조가 음복연의 시행여부를 문의한 일이 있었다. 영조는 음복 연을 영원히 정지하도록 명하고 그 내용을 『속오례의』에 반영하게 하였다. 예조 가 음복연에 관해 문의해 오던 관행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sup>23)</sup> 예조가 음복연의 시행여부를 매번 문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영조가 『속오례의』에 새로운 규정을 삽입하게 하였던 것도 모두 『오례의』 때문이었다.

『오례의』의 중요성은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들에서도 확인된다. 영조는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救食禮를 다시 행하면서 『오례의』의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오례의』는 전례가 동일하지 않은 의례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1733년(영조9) 영조가 문묘에 酌獻하는 의례에 대해 신하들에게 물은 일이 있었다. 이때 좌의정 徐命均 등은 『오례의』의 小註를 근거로 영조에게 답하였다.

1744년(영조20) 영조가 耆老所의 의례를 정비하려 한 일이 있었다. 영조는 의례를 간소화하기 위해 告願를 시행하려 하지 않은 것이다. 이때 鄭彦儒가 『오례의』를 근거로 하여 고묘할 것을 권하자 영조는 이를 받아들였다.<sup>24)</sup> 영조도 신하들도 모두 오례의 규정을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국대전』도 『오례의』와 같은 비중으로 인식되었다. 『경국대전』 立後條에는 生家나 養家 중에서 한쪽이라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사망하면 繼後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25)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의 인정을 받으면 계후입안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는 『別繼後謄錄』이 따로 만들어질 정도로 빈번한 예외였다.26)

<sup>23)</sup> 영조 20년까지 예조는 매년 宗廟 大祭親行을 준비하면서 음복연 문제로 항상 품주하였다. 예조는 『오례의』에 음복연을 한다는 글을 근거로 시행여부를 물었고, 영조는 그때마다 거행을 정지시켰다. 이후 영조는 예조가 계속해서 이를 품계하니 수교한 것으로 成憲을 만들고 예품을 하지 않게 하였다.

<sup>『</sup>영조실록』권60, 20년 8월 19일 계해.

國恤三年後 五禮儀例有結綵歌謠等禮 大享後有飲福宴 而聖祖特命除之 猗歟盛矣 而該曹猶憑古禮而稟之 依近例勿爲擧行 雖作例批 其或侈大之君 誤引舊文 泛以依允 則噫我聖祖聖考追慕不忍之盛孝 其將抑而不行 此後其令儀曹 以受教爲成憲 勿爲例稟

<sup>24) 『</sup>승정원일기』 영조 20년 8월 26일 경오.

<sup>25) 『</sup>경국대전』「예전」立後

以同宗之長子爲後者 及一邊父母俱沒者 並勿聽

일반적으로 국왕은 계후에 관한 상소를 받고 이를 예조에 하문했다. 계후를 받는 사례가 실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조는 매번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라 계후를 허락하지 말 것을 청하였다. 예조는 『경국대전』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27)

『오례의』가 가진 국전으로서의 권위는 『속오례의』가 편찬된 뒤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777년(정조1)에 정조가 경희궁에서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親押하는 장소가 문제가 되었다. 정조는 경희궁에 있을 때 魂殿을 資政殿에다奉安했었기 때문에 法殿에서 임시로 親押 했었다. 그런데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새롭게 親押할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다. 정조는 "五禮儀에 수록된 '선정정에서 친압하고 축문하는' 예에 의거하여 제사 이틀 전에 친압하야 한다."라고 말했다. 28)(강조는 필자) 그런데 이 규정은 『오례의』가 아니라『속오례의』「고이」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

정조는 關王廟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오례의』를 거론했다. 정조는 관왕묘에 관한 규정에 관해 "五禮儀에'饌實과 樽罍는 선농단과 더불어 같 게 한다'는 글이 있다."라고 말했다.30)(강조는 필자) 이 정조가 말한 이 규정 역시 『오례의』가 아니라 『속오례의』의 서례에 정리되어 있다.31)

『속오례의』를 『오례의』 안에 포함시켜서 같은 책으로 인식했던 것은 정

<sup>26)</sup> 예조에서는 계후입안을 계후 당사자에게 발급해주고, 『계후등록』을 만들어서 이를 따로 관리하였다. 『별계후등록』은 특수한 경우나 『경국대전』에서 허락하지 않은 계후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한 책이다.

<sup>27)</sup> 계후입한 관한 법전의 규정은 『대전통편』단계에서 변경되었다. 한편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다른편 부모와 문장이 계후를 청할 경우 허락한다는 내용이 실린 것이 다. (『대전통편』禮典 立後. 情理可矜 則或因 一邊父母及門長上言本曹 回啓許令立後)

<sup>28) 『</sup>정조실록』권4, 1년 8월 28일 신유.

辛酉 命親押處所日字 依五禮儀爲之 教曰 慶熙宮 則奉魂殿于資政殿 故親押權行於法殿而今則還御 依五禮儀宣政殿親押祝文例 於祭前二日 親押 而近則傳旨日兼行 此後依禮文舉行 侍衛詳考久遠之例 亦令遵舊也

<sup>29) 『</sup>國朝續五禮儀』「ユ이」序例考異 傳香祝條

<sup>30) 『</sup>정조실록』 권11, 5년 윤5월 21일 신축. 鳌正關王廟祭品儀 敎曰 取考先朝丙申謄錄 予小子承命攝行 而正位配位,皆有祭品 且五 禮儀 有饌實樽罍 與先農壇同之文

<sup>31) 『</sup>國朝續五禮儀』「서례」吉禮

조 뿐만이 아니었다. 1782년(정조6) 誓戒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32) 좌의정 洪樂性, 우의정 李福源, 판중추 鄭弘淳·鄭存謙은 모두 "周禮 및 唐·宋·明의 儀文에는 오직 天地와 廟社에 제사지낼 때에만 誓戒가 있고, 國朝五禮儀에는 묘사 이외에서계에 관한 글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33)(강조는 필자) 『오례의』에는 齋戒에관한 의례는 있지만 서계에 관한 의례는 없다. 위의 신료들이 언급한 서계에 관한 항목은 바로『속오례의』에 수록된 것이다.34)

『오례의』의 권위는 『국조상례보편』으로 이어졌다.『국조상례보편』은 『속오례의』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왕실 喪葬禮를 반영하여 새롭게 정리한 국가의례서이다. 흉례 이외의 吉禮·嘉禮·賓禮·軍禮는 계속해서 『오례의』와『속오례의』를 준용하고 있었다. 이 책은 1752년(영조28)에 처음 편찬되었다가6년 뒤에 개정되었다. 정조 때의 예조판서 尹蓍東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752년 판본을 회수하여 없앨 것을 청하였다. 이것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35)

## 제2절『國朝五禮儀』와 『國朝續五禮儀』의 관계

『오례의』를 개정하자는 논의는 일찍부터 시작되었다.36) 영조 때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의례가 거행되었고, 도성의 일상적인 장소들도 역사적인 공간으로 변

<sup>32)</sup> 서계라는 것은 제사를 앞두고 祭官들이 齋戒하고, 근신할 것을 맹세하는 의례이다.

<sup>33) 『</sup>정조실록』 권13,6년 5월 6일 임인. 壬寅 安川君娃 上疏言 太廟大享 雖攝行有受誓戒之節 景慕宮大享 雖親行 無此儀 請詢有司行之… … 右議政 李福源 判中樞 鄭弘淳 鄭存謙 皆言 周禮及唐宋皇明儀文 唯祭天地廟社有誓戒 國朝五禮儀 廟社外 無誓戒之文

<sup>34) 『</sup>國朝續五禮儀』「길례」親臨誓戒儀

<sup>35)</sup> 국가가 『국조상례보편』을 관리하는 양상은 『경국대전』의 판본을 관리하는 데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경국대전』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己丑大典(1469년), 辛卯大典(1471년), 甲午大典(1474년)과 乙巳大典(1485)년 판본 등이 있었는데 현재는 최종본인 을사대전만 전해지고 있다. 새로운 법전이 반포되면 그 이전의 법전은 물론, 목판까지 회수하여 소각하였기 때문이다.

<sup>36) 『</sup>영조실록』19권, 4년 9월 5일 임자.

화되었다.37) 따라서 새로운 의례의 근거와 전례를 찾거나, 규정상으로만 남아 있 던 의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다.

『속오례의』의 편찬은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속오례의』는 『오례의』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동시에 『속대전』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었다. 물론 선행연구에서 『속오례의』와 『속대전』이 같은 시기에 편찬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왜 같은 시기에 편찬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38) 이 절에서는 『속오례의』와 『속대전』의 관계를 『오례의』와 경국대전의 관계를 통해 유추함으로써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례의』를 증수하라는 명은 『영조실록』에서 1740년(영조16)<sup>39)</sup>, 1741년 (영조17)<sup>40)</sup>, 1743년(영조19)<sup>41)</sup> 등 세 차례에 걸쳐 확인된다. 속오례의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확인되는 것은 1740년(영조16)이다. 그해 6월 畫講이 있었을 때 윤양래가 숙종 때의 복제에 관해서 정리한 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조는 "대신과 유신에게 물어서 첨입하여 오례의를 증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

<sup>37)</sup> 김지영, 2008, 「조선후기 국왕 행차와 거둥길」 『서울학연구』30, 서울학연구소.

<sup>38)</sup> 강순애, 1982, 『朝鮮 英祖朝의 圖書編纂 및 刊行에 관한 書誌的 硏究』, 성균관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홍순민, 1998, 「조선 후기 법전 편찬의 추이와 정치운영의 변동」 『한국문화』 21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우경섭, 2001, 「영조 전반기(1724~1744)의 서적정책」『규장각』제24집, 서울대 규장 각.

함재학, 2004, 「경국대전이 조선의 헌법인가?」『법철학연구』7권 2호, 한국법철학회.

윤 정, 2007, 「재위 전반(1725-1746) 영조의 군신관계 이해 -'군신분의'론의 적용과 지향을 중심으로-」『한국사학보』29, 고려사학회.

김백철, 2008, 앞의 논문

<sup>39) 『</sup>영조실록』 권51, 16년 6월 3일 임신.

壬申 上行朝講 特進官尹陽來 奏曰 肅廟朝君臣服制收議 乃周禮後 始有之事 而尚無成書 宜令印出頒布 上曰 詢問大臣儒臣 添入爲續五禮儀可也

<sup>40) 『</sup>영조실록』 권53. 17년 6월 5일 무술.

命撰續五禮儀 先是上命 知事李德壽 修整五禮儀 至是德壽奏曰 懿廟文昭殿靈星壇 今則無之 此可當刪也 … …上曰 王者絶旁朞之旁字 乃指國戚也 至如戊戌戊申服制 雖曰朞服 卽國家典禮 決不可闕 宜以戊戌戊申儀註入錄也 領議政金在魯曰 以增補五禮儀 爲名可乎 上曰 宜以續五禮 儀 爲編名也

<sup>41) 『</sup>영조실록』 권58, 19년 11월 14일 계사.

命前大提學 李德壽 釐正五禮儀

사에서 보이는 "續五禮儀"라는 단어가 『국조속오례의』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42)

『속오례의』라는 단어가 책 이름으로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은 1741년(영조 17) 6월이다. 1741년 5월 영조는 李德壽에게 『오례의』의 궁궐이름과 교량이름을 수정하게 했다.43) 한달 뒤 이덕수는 『오례의』를 수정한 결과를 보고했다.44) 이덕수가 보고한 내용은 의묘·문소전·영성단 등 당대에 시행되지 않는 의례들이었다. 영조는 기타 복제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시점에서 『속오례의』의 내용은 좀더 구체화되어 있었다. 영조는 새롭게 편찬될 국가의례서의 이름으로 『속오례의』를 거론했다.45)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덕수가『오례의』정비에 관련된 일을 시작하였는지 추론하기 어렵다. 1740년에 영조의명령이 있은 이후에 언제부터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741년에는『속오례의』를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743년(영조19)에 이르도록 『속오례의』의 편찬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영조는 『속오례의』의 편찬을 독려하면서 현직에서 물러나 있던 이덕수를 다시 불러올리고 유수원을 당청으로 임명하였다.46)

<sup>42) 『</sup>속오례의』의 찬집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이영춘과 조재모는 『영조실록』기사에 따라 16년으로 보고있다. 윤정은 1741년 6월 5일에 명이 정식으로 있었다고 보고 있으며, 한영우는 동왕 19년 11월 14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사 이외에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간단히 언급만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만을 언급한다 (이영춘, 2002, 앞의 논문, p.198; 조재모, 2003, 앞의 논문, p.62; 윤정, 2007, 앞의 논문, p.129; 한영우, 2007, 『꿈과 반역의실학자 유수원』, 지식산업사, p.41.)

<sup>43) 『</sup>영조실록』 권53. 영조 17년 5월 1일 갑자.

<sup>44) 『</sup>승정원일기』에 영조 17년 6월 9일에 수록된 내용이 『영조실록』에는 영조 17년 6월 5일에 기록되어 있다. 비슷한 논의가 5일에 있고 다시 9일에 있었는지 단순히 날짜 오류인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sup>45) 『</sup>승정원일기』영조 17년 6월 9일 임인. 德壽日 臣常時於禮節上 甚牛疎 頃者猥承五禮儀修正之命

<sup>46) 『</sup>승정원일기』 영조 19년 11월 14일 계사. 上又曰 五禮儀 乃是時王之制 而亦有潰漏者 故予

上又曰 五禮儀 乃是時王之制 而亦有遺漏者 故予於向時 命李德壽使之改正矣 尚今不爲之 可慨 ··· ··· 上又曰 李德壽時無職名 而在於何地耶 寅明曰 無見職 在於果川地矣 上曰 予必繁切 招來然後 可以成之 而亦不可無同爲修正者 以前正柳壽垣爲郎 其令速爲修成 可也 上又曰 兩人俱重聽 而以文字相通 自可相確 且如此之人 必能從容 似可善爲之矣 仍命普昱書傳旨曰 我國之事凡於大小 初雖行而中止者多矣 此正作舍道傍也 若此國初五禮儀經國大典 何以成垂 頃者以五禮

『속오례의』편찬 작업은 1744년(영조20)에 이덕수가 사망하여 잠시 중단되었다가 예조판서 李宗城에 의해 마무리되었다. 실무자는 유수원에서 윤광소로 바뀌었다.47) 1744년 8월 27일 마침내 『속오례의』가 완성되었다. 오례의증수도감당상 이종성과 당청 윤광소는 완성된 『속오례의』를 영조에게 바쳤다.48)

1740년(영조16)에서 1744년(영조20)까지는 영조 즉위 초와 달리 정국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있었다.<sup>49)</sup> 1741년(영조17) 「大訓」을 발표할 즈음, 영조는 경종 독살설과 당파간의 시비론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국을 주도하게되었다.<sup>50)</sup> 이기간에 영조는 안정된 정치상황에서 대왕대비(仁元王后)에게 進宴을 하였고, 스스로는 耆老所에 들어갔다. 『속오례의』는 이러한 정치적인 분위기 속에서 편찬되었다.<sup>51)</sup> 1744년(영조20)에 영조는 『속대전』,『속오례의』와 「대훈」을 완성했으므로 자신은 할 일을 다했다고 자부하였다.<sup>52)</sup>

영조는 『속대전』과 『속오례의』를 편찬하면서 두 책을 별도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영조는 『속오례의』「御製序文」에서 성종의 업적을 거론하면서 『오례 의』와 『경국대전』을 같이 언급하였다. 또 자신의 업적을 말할 때에도 『속오례

儀釐正事 付之於前大提學李德壽 今幾年矣 此非職名之比 不可一任其遲滯 前大提學李德壽 其 令乘馹上來 虛其公廨 官給物力 不可無其郞 前正柳壽垣 郞廳差下 其令卽爲刊成

<sup>47) 『</sup>속오례의』에 이름을 올린 신료는 이덕수, 이종성, 윤광소 뿐이고 유수원은 없다. 이 종성은 『속오례의』를 영조에게 올릴 때도 예조판서였고, 증수도감 당상은 겸직이었다. (『국조속오례의』「흉례」)

<sup>48) 『</sup>속오례의』가 완성되어 영조에게 바쳐지지만, 간행은 이후에 이루어졌다. 또한 1744년(영조20) 이후의 변개된 내용도 『속오례의』에 계속해서 실었다.

<sup>49)</sup> 우경섭 뿐만 아니라 이경구도 경신처분과 신유대훈을 이후로 영조의 탕평책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호훈도 신유대훈 발표 후 정치적 안정을 어느 정도 이룬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구, 2004, 「1740년(영조16)이후 영조의 정치운영」『역사와 현실』53권, 한국역사연구회, ; 정호훈, 2004, 앞의 글, p.97)

<sup>50)</sup> 우경섭은 영조 전반기(1724~1744년)를 3기로 다시 세분하여 그 사이에 간행된 서적을 통해 당시 서적정책의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제1기를 1724년 (영조 즉위)부터 을유처분이 있었던 1729년(영조5)까지, 제2기는 탕평론이 제기되었던 1730년(영조6)부터 경신처분 전인 1739년(영조15)까지, 제3기를 경신처분이 있었던 1740년(영조16)부터 『속대전』『속오례의』가 완성되어 제도개혁이 일단락된 1744년 (영조20)까지로 구분하고 있다. (우경섭, 2001, 앞의 논문.)

<sup>51) 『</sup>속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이미 여러 편 존재하고 본고는 『속오례의』를 다루고 있는 논문이기에 의의와 찬집과정을 살피지는 않겠다.

<sup>52) 『</sup>영조실록』 권60, 20년 12월 1일 갑자.

의』와 『속대전』을 함께 거론하였다. 영조가 『속오례의』「어제서문」을 쓴 것은 1744년 2월 23일이었다. 이 때『속대전』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5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속대전』을 『속오례의』와 함께 언급하였다.54) 영조가 두책을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更張을 준비하면서 함께 말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속오례의』와 『속대전』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속오례의』와 『속대전』은 『오례의』와『경국대전』을 전범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후자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지않을 수 없다.

조선은 예치를 표방한 국가였고, 이러한 이념을 國典에 담았다. 조선의 국전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국대전』과 『오례의』가 대표적이다. 『경국대전』은 吏·戶·禮·兵·刑·工 등 6전 안에 국가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국대전』에는 국왕에 대한 언급이 없다.55) 국왕뿐만 아니라 왕비, 왕대비, 대왕대비에 대한 규정도 없다.

국왕의 의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오례의』이다.56) 『오례의』는 국왕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역할을 했다. 왕위계승자와 선왕과의 관계는 흉례의 복제에, 제사·외교·군사 문제에 관한 국왕의 위상은 社稷祭·賓禮·軍禮 등에 규정되어 있다.57) 조선 초에는 하늘에 제사하는 圓丘祭가 시행되었으나『오례의』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제후국으로서 僭越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세조 때 이후로는 원구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의례는 그의례를 주관하는 자의 위상을 표상한다.

<sup>53) 『</sup>승정원일기』 영조 20년 2월 23일 신미.

<sup>54)</sup> 김백철, 2008, 앞의 논문.

<sup>55)</sup> 박현모, 2007, 「유교적 예치이념의 법전화: 『경국대전』에 나타난 예치국가의 이념과 실제」『유교의 예치 이념과 조선』, 청계.

<sup>56) 『</sup>국조오례의』는 국왕의 의례가 중심이다. 州縣의 여제 또는 문무과의 放榜에 관한의식, 종친·문·무 1품 이하의 혼례의식 등도 국왕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주현에서 지내는 제사의 주체는 국왕이 임명한 관리로 국왕을 대신하고 있어서 국왕과 관련이 있다. 방방에 관한 의식도 문문과 전시에 관한 의식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혼례의식 역시 종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왕과 관련이 없는 의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sup>57)</sup> 빈례와 군례 자체는 사서인에게는 없는 의례였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대상 역시 극히 적었다.

『오례의』는 국왕을 중심으로 한 의례가 핵심적인 내용을 이룬다. 신하들의의례는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다. 1745년(영조21)에 종묘에 관한 의례를 정비한 일이 있었다. 이 때 『오례의』와 『대전』을 함께 참고하였다. 제관의 복식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오례의』 뿐만 아니라 『경국대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58》『경국대전』예전 의주에는 "오례의를 참고하라"는 기록이 보인다. 『경국대전』이이 신하에 관한 것이라면, 『오례의』는 국왕에 관한 것이므로 『경국대전』이 만들어질 때부터 儀註는 『오례의』를 참고하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속대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속대전』에는 "속오례의를 참고하라"는 설명이 있다. 『속대전』과 『속오례의』의 관계는 다른 규정들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耆老所에 관한 규정은 『속대전』과 『속오례의』에 모 두 실려있지만 『속대전』에는 대신들에 관한 내용이 『속오례의』에는 국왕의 복식과 의장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친림하여 서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신하들에 해당하는 내용은 『속대전』에, 국왕에 관한 사항은 『속오례의』에 기 록되어 있다. 『속대전』에서 국왕과 관계된 의례 자체를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 지만, 『속오례의』에는 의례 절차와 과정 등이 자세하게 수록되었다. 속대전과 속오례의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는 거의 모든 면에서 확인된다.

<sup>58) 『</sup>영조실록』 권61, 21년 4월 7일 을축.

#### 제3장 『國朝續五禮儀』와 편찬의도

#### 제1절 『國朝續五禮儀』의 구성과 내용

『속오례의』는 기본적으로 『오례의』의 체제를 따랐다. 따라서 『오례의』와 마찬가지로 圖說을 포함하고 있는 「序例」와 「길례」·「가례」·「빈례」·「군례」·「흉례」가 있다. 여기에 더해 『오례의』와의 차이점을 밝힌 「考異」가 한편 더 있다. 『오례의』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빈례는 추가된 부분이 없어서 "無"로만 적었다.따라서 「서례」와 「고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네 종류의 禮가 추가된 셈이다. 『속오례의』는 『오례의』의 내용을 모두 수록하고 새로운 내용을 덧붙인 형태는 아니었다. 따라서 『속오례의』는 별도로 존재했지만 『오례의』와 함께 있어야 완전해진다.

『속오례의』는 기본적으로 『오례의』에 기반을 두고, 버릴 것[去]·취할 것[就]·수정할 것[修]·삭제할 것[删]을 정리한 책이다.59)『오례의』에 수정을 가할 수 없으므로 「고이」를 새로 만들었다. 『속오례의』는 「길례」 22항목, 「가례」 20항목, 「군례」는 3항목, 「흉례」는 11항목으로 되어있다. 「빈례」는 항목이 없다. 「흉례」가 11개 항목이라는 것은 『속오례의』의 목록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흉례」 규정을 확인해 보면, 遷陵儀60)안에 17小目61), 莊陵復位儀62)안에 7小目, 溫陵復位儀63)안에 8小目이 있다. 그리고 본문

<sup>59) 『</sup>國朝續五禮儀』「凡例」

一 五禮儀 始編於世宗朝 成書於成廟朝 列聖繼講 儀文漸備 至我肅廟及當宁 曠典縟儀 靡不畢舉有可以垂後來 而作儀 則謹遵成命 一倣儀禮之續通觧萬曆之續會典 編爲續五禮儀 去就修刪 並稟睿裁

<sup>60)</sup> 능을 이장하는 의례이다. 『속오례의』에는 長陵과 寧陵을 이장할 때의 의례를 실었다.(『국조속오례의』「흉례」遷陵儀)

<sup>61)</sup> 小目이라고 표현 한 것은 『속오례의』「범례」에 천릉의 大目안에 다시 小目을 배치한다고 적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條라고 하지 않은 것은 『오례의』자체가 규정한 條와 구별을 짓기 위해서이다.(『國朝續五禮儀』「凡例」)

<sup>62)</sup> 단종을 복위할 때 거행한 의례이다. (『國朝續五禮儀』「흉례」莊陵復位儀)

<sup>63)</sup> 중종의 元妃인 단경왕후를 복위할 때 거행한 의례이다. (『국조속오례의』「흉례」溫

없이 『오례의』를 따르도록 하고 순서만을 나타낸 의례가 遷陵儀에서는 8小目이고, 莊陵復位儀에서는 3小目이다. 溫陵復位儀는 8小目이고, 중에서 7小目은 장릉복위를 참고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천릉의 10小目, 온릉복위 5小目, 장릉복위는 1小目이 새로 정비되었다.

「고이」를 따로 편찬할 정도로 『속오례의』는 『오례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서술방식과 내용은 차이가지고 있었다. 『오례의』에는 대왕대비·왕대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속오례의』에서는 왕대비·대왕대비와 관련한 大王大妃上尊號冊寶儀,64)王大妃尊號冊寶親傳儀,大王大妃進宴儀,大王大妃正朝陳賀親傳致詞表裏儀 등의 의례가 정리되어 수록되었다.65)『오례의』에서 미비했던 왕세자 관련 의례(王世子謁宗廟永寧殿儀,王世子嬪謁宗廟永寧殿儀,王世子受朝參儀)도 보강되었다.

의례를 언제 행했는지 어느 때에 하교했는지를 밝혀놓았다는 점도 『속오례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또한 시행했던 중요한 의례들을 정리하여 그대도 실었다.66) 예를 들면, 親臨誓戒儀의 말미에는 "금상 기미년에 사직 및 종묘 친제시에 비로서 이 의례를 행하다"라고 되어 있다67). 春秋謁宗廟永寧殿儀의 말미에는 "숙종 임오년 봄가을로 예를 행하도록 특별히 명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68) 또 莊陵復位儀의 경우에는 목록 뒤에는 "肅宗己卯에 단종대왕의 위호를 추복하였을 때에 이 의례가 있었다."라고 되어있다 69)

陵復位儀.)

<sup>64)</sup> 대왕대비에게 존호의 책과 보를 올리는 의식이다. 『속오례의』에는 인원왕후가 대왕 대비로 있을 때의 의식을 실었다. (『국조속오례의』「嘉禮」大王大妃上尊號冊寶儀)

<sup>65) 『</sup>오례의』의 懸註에서도 대왕대비·왕대비 관련 의주를 찾아 볼 수 없다. 왕대비, 대왕 대비와 관련된 의례도 영조가 친행한 의례가 많았다. 왕대비에게 존호를 올리는 王大妃 尊號冊實親傳儀는 경종 때 행해진 의례이고 왕대비 관련 의례라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영조가 왕세제로 참여하였던 의례다.

<sup>66)</sup> 동일한 의례가 여러 번 행해졌으면, 행해졌던 그 의례들을 다 반영해서 실었다. 國恤服制를 보면 대왕을 위한 복[爲大王服制]이 복제 변경 이후 두 번 행해졌는데, 두 번의 상복을 다 반영하였다. (『國朝續五禮儀』「凶禮」)

<sup>67) 『</sup>국圣속오례의』「吉禮」誓戒 今上己未 始行此儀 於社稷及宗廟親祭時

<sup>68) 『</sup>국조속오레의』「吉禮」春秋謁宗廟永寧殿儀

<sup>69) 『</sup>국조속오례의』「凶禮」 莊陵復位儀

『속오례의』가 가진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은 수록된 의례의 대부분이 숙종과 영조 때에 행해진 의례라는 사실이다. 이 의례들은 두 가지 계통으로 구분된다. 먼저 숙종과 영조 이전부터 시행됐던 의례가 있다. 拜大院君祠宇儀, 王大妃尊號冊寶親傳儀, 納妃親迎儀, 王世子入闕儀, 宣露布儀, 遷陵儀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왕세자 입궐의를 제외한 나머지 의례들의 세부내용이 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숙종대 이후 시행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그런가 하면 숙종 대 이후로 처음 시행한 의례들도 있다. 결국 『속오례의』는 숙종 대 이후에 시행된 의례에 초점이 맞추어진 셈이다.70)

영조는 숙종대의 전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로 숙종대에 행한 의례를 근거로 삼았다. 앞에서 거론했던 음복연이 그런 경우이다. 영조는 현종과 숙종의 뜻을 근거로 하여 음복연을 영원히 폐지하게 하고, 그 내용을 『속오례의』에 반영하였다. 현종이 부묘 후의 음복연을 정지하도록 명을 내렸기 때문에 영조의 논리는 일면 타당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영조가 숙종대의 전례를 근거로 하여 大祀의 음복연도 폐지한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조금 달랐다. 숙종 때 음복연은 행해지기도 하고 정지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영조는 北郊에 나가 친제를 지낸 뒤에도 그 근거를 효종과 숙종대의 사례에서 찾았다.71) 임금이 친제를 위해 북교에 나아간 것은 영조가 처음이었다. 그런데영조가 말한 숙종의 전례는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없었다. 『오례의』에는 국왕이선농단에 치제하는 규정이 있었고 숙종은 그 규정에 따라 친제를 행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본다면 영조는 『오례의』의 규정을 근거로 삼았어야 옳았음에도불구하고 숙종대의 사례를 거론한 것이다. 영조는 숙종이 행한 선농단 친제를

追復端宗大王位號時 有此儀

<sup>70)</sup> 拜大院君祠宇儀는 선조때 시행한 의례였으나 舊儀가 전해지지 않아서 숙종 을해년에 행해진 의례가 『속오례의』에 실렸다. 納妃親迎儀도 중종이 처음 친영례를 하였지만 그 내용이 전해지지 않아서 숙종 임오년의 의례를 실었다. 御宴儀의 경우는 세종 때의 養老宴儀를 참고하여 영조대에 음악과 절차를 수정하였다. 遷陵儀는 현종때의 것을 바탕으로 하여 영조대에 추가된 내용을 기록하였다.

<sup>71)</sup> 효종이 남단에 처음 친제한 것과 숙종이 선농단에 처음 친제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영조실록』권31, 8년 6월 17일 임신, 上日 南壇則 孝廟始行親祭 先農壇則 肅廟始行 親祭 北郊則予於乙巳 倣此親祭矣)

『속오례의』에 다시 정리하여 실었다.72)

영조는 의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1743년(영조19) 11월 13일, 영조는 洪鳳漢의 딸(혜경궁 홍씨)을 왕세자빈으로 간택했다. 다음 날 영조는 世子賓朝見禮의 儀註에 慈殿(인원왕후)께 執贄하는 禮가없는 이유를 신하들에게 물었다. 가례도감 당상 閔應洙는 조현례를 행할 때 왕세자빈은 국왕[大殿]과 중전[坤殿]께만 집지를 행하고 윗전[上殿]께는 다음날 前後四拜를 할 뿐이라고 말하였다. 민응수의 주장은 『오례의』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그러나 영조는 사가의 예를 동원하여 그 관례를 수정하게 했다. 왕세자빈 조현례를 자전과 국왕·중전이 같은 날 함께 받게 한 것이다.73)

大射禮의 경우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의례에 관한 논의를 주도했던 것은 영조였다. 영조는 이 의례의 명칭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견해를 관철시켰다. 예조참판 吳光運은 『오례의』를 근거로 "射禮"로 정하자고 청하였다. 그러나 영조는 오광운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大射"로 결정하였다. 74) 나아가 대사례에 사용될 도구까지도 일일이 확인하고 준비시켰다.75) 대사례를 행한 후에는 "200년만에 시행하는 의례이므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大射禮儀軌』를 만들고, 그 내용을 『속오례의』에 반영하게 하였다.76)

<sup>72)</sup> 이미 『오례의』에 선농단에 제사하는 의례가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제정된 의절은 없다. 다만 『오례의』에 있던 선농 관련 의례를 따르고 친경의식을 뺀다는 기록만을 덧붙였다.

<sup>73) 『</sup>승정원일기』 영조 19년 11월14일 계사. 1743년(영조19)에 永城尉 申光綬의 私家에서 和協翁主가(英祖庶八女)가 舅姑朝見禮를 행할 때 집지를 舅姑대신 祖父母가 받게 된 경우가 있었다. 영조는 이러한 私家에서의 예를 들어 이를 수정하게 하였다.

<sup>74)</sup> 오광운의 주청이 있은 뒤, 영조는 大射가 바로 황제의 예인지를 오광운에게 다시 물어 확인하였다. 오광운이 제후 또한 大射의 禮가 있었다는 사례를 들자, 영조는 신하들과 논의를 거쳐 참칭이 아니니 무방하다고 하고 의례의 명칭을 大射로 정하였다. (『승정 원일기』 영조 19년 3월 29일 계미)

<sup>75)</sup> 영조는 천자, 제후, 대부가 쓰는 과녁에 차이가 있는지, 벌주는 어떠한 것을 쓰는지, 절차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등 세세한 사항을 물어 보고 준비시키고 있었다. (『승정원일기』 영조 19년 3월 28일 임오)

<sup>76) 『</sup>승정원일기』 영조 19년 4월 17일 경자.

『속오례의』에 실리는 내용은 모두 영조의 재가를 받았다. 영조는 자신이 직접 행하고 마련한 의례들이 『속오례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일일이 묻고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영조가 親臨했던 의례들이 대부분 『속오례의』에 수록되었다.

숙종 이후의 의례가 영조 때에 새로 정리되는 의례서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오래된 의례의 경우 증빙할 자료가 없을 확률이 높았고 숙종 이후 많은 의례들이 정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의례를 국전인 『속오례의』에 반영할 것인지는 영조의 선택이었다.

#### 제2절 親臨儀禮77) 반영의 의미

영조는 의례의 강화를 통해 孝悌와 君臣分義 등의 유학적 가치들을 주도하면서 정국을 장악해 갔다.78) 단순히 의례가 존재하는 것과 그 의례를 실행하는 것은 근 차이가 있다. 특히 의례를 거행할 때, 국왕이 친행하는 것과 攝行하는 것은 상징하는 의미가 달랐다. 親臨儀禮의 경우 섭행하는 의례에 비해 높은 위상을 가졌으며 격식도 매우 엄격했다. 영조는 자신의 親臨儀禮들을 『속오례의』에 반영하였다.

『오례의』와 『속오례의』의 儀文에도 攝行과 친행은 그 격이 달랐다. 사직의 祈穀祭의 경우 親臨하면 大祀로 취급하였지만 攝行하면 小祀로 취급하였다.79)

<sup>77)</sup> 이 논문에서는 국왕이 직접행하는 의례를 親臨儀禮라고 하였다. 본문에서 쓰인 親行儀 禮의 의미는 영조가 국왕으로서 거행한 의례 이외에 왕자나 왕세제로 있었을 때 직접 행한 의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sup>78)</sup> 이에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신엽, 2001,「조선시대 大射禮의 施行과 그 運營」『조선시대사학보』16권 1호,조선 시대사학회; 이왕무, 2006,「영조의 私親宮·園 조성과 幸行」『藏書閣』15,한국학중앙 연구원; 김지영, 2005, 앞의 글; 임민혁, 2006, 앞의 글; 윤 정, 2007, 앞의 글; 김지영, 2008, 앞의 글.

<sup>79) 『</sup>국조속오례의』 「서례」 辨祀

또한 동일한 社稷祭라도 親祭에 사용되는 희생의 숫자는 섭행의 그것 보다 항상 많았다. 그러나 攝行할 때는 친제보다 양 3마리를 적게 사용했다. 또한 친림의례는 엄격하게 진행되었다. 때문에 사소한 의례 절차도 철저히 『오례의』에 근거하여 시행하였다. 1744년(영조 20) 2월에 영조가 영희전에 展拜할 때 우부승지 金尚魯가 『오례의』에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영조는 의례를 거행하는 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상로의 의견을 즉시 수용하였다.80)

한편 영조는 친림의례가 가지고 있는 명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따라서 명분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친림의례에 대해서는 『속오례의』에 수록하지 않았다. 皇壇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sup>81)</sup> 영조는 황단의를 『속오례의』에 반영하려하다가결국 수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sup>82)</sup> 황단의는 전례가 없었고 조선의 국왕이 중국의 황제를 제사지내는 것은 僭越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조는 친림의례를 『속오례의』에 수록하여 국왕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명분이 부족한 일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sup>83)</sup>

<sup>80)</sup> 임금이 연에 오르려고 할 때, 김상로가 『오례의』에 따라 外寺(외사복시)의 次官이 대행하는 것이 옳다고 아뢰였다. 영조는 의례를 거행하는 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상로의 의견을 수용하여, 유우기를 군직에 遞付하고 외시의 차관이 직을 수행하도록 명하였다. (『승정원일기』영조 20년 2월 4일 임자.) 이때 유우기는 서장관으로 연경에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오례의』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을 내렸다.

<sup>81)</sup> 皇壇(또는 大報壇)은 숙종시기, 임진왜란 때 明 神宗이 조선에 원병을 보낸 것을 보답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이후 明 太祖와 明 毅宗을 함께 제향하였다. (정옥자, 1998,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sup>82) 『</sup>승정원일기』 영조 20년 7월 12일 정해. 宗城曰 不必然矣 大報壇事 當載錄矣 上曰 此則終涉如何 勿錄 可也 『승정원일기』영조 20년 7월 25일 경자.

上曰 大報壇儀禮, 亦欲載錄乎 宗城曰 肅廟朝 以君臣服制 正君臣之大義 以大報壇 明天下之大義而事有難便者 方未停當矣 尹光紹, 以爲當載錄矣 上曰 此事終涉如何 而若見漏則亦甚缺然矣 宗城曰 古云懼煩多畏 雖或見漏 亦何妨乎 上曰 寶鑑已載 此則拔之 可也

<sup>83)</sup> 영조가 私親인 숙빈 최씨를 추숭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전례를 찾아서 자신의 주장을 확고히 하고 부묘에는 뜻이 없다는 것을 신하들에게 누누이 이야기 한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숙종을 세실로 만들어 不遷之主로 삼는 과정에서 전례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국조보감』의 편찬을 세실론보다 먼저 논의하고, 숙종을 不遷之主로 삼을 때는 대신과 유신들에게 일일이 자문을 구하는 등 민감하게 일을 추진해 나갔다. 이때 신하들과 의견이 부합되자 매우 빨리 일을 처리했다. (임민혁, 2006, 「조선후기 영조의 孝悌 논리와 私親追崇」『朝鮮時代史學報』39, 朝鮮時代史學會; 이현진, 2006, 「영·정조대 종묘 世室論과 왕실의 위상 강화」『朝鮮時代史學報』38, 朝鮮時代史學會。)

영조는 친림의례뿐만 아니라 왕실 의례의 강화를 통해서도 국왕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였다. 『속오례의』에는 국왕이 친림한 의례가 가장 많았지만 또한 다양한 왕실 구성원의 의례도 첨부되었다. 『오례의』에는 왕세자와 師傅의 상견례만 수록하였다.84) 그러나『속오례의』에는 왕자와 사부의 상견례도 추가되었다.85) 숭통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국왕의 私親에 대한 제사도 일정 부분 국가제사에 편입되었다.86) 앞에서 거론한 것과 같이 『속오례의』에는 대왕대비·왕대비·왕대비·왕비에 관한 의례가 첨부되었고, 왕세자의 의례도 강화되었다. 왕실관련 의례가 『속오례의』에 편입되었다는 것은 왕실 의례가 내부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국가의례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상징한다.87)

왕실의례들을 국가의례로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영조는 자신이 행한 의례를 주로 반영하였다. 『속오례의』에 수록된 사친에 관한 세 항목 중 두 가지는 영조 와 직접 관련된 것이었다.88) 拜毓祥廟儀, 拜昭寧墓儀는 영조의 생모인 숙빈최씨에 관한 의례로 영조가 국왕에 즉위한 이후 시행한 것이다.89) 왕자와 왕세자와 관련 된 의례도 영조가 친행한 것을 반영하였다. 王子君師傳相見儀는 영조가 왕자(延礽 君)였을 때 숙종의 명으로 행한 의례이다. 王世子入闕儀도 효종이 왕세자로 입궐 할 때의 의례를 기본으로 삼고 있지만, 영조가 시행했던 전례도 『속오례의』에 기록하였다.

영조는 자신이 행한 의례가 『오례의』와 차이가 있을 경우 명칭을 변경하기 도 하였다. 영조대 『오례의』의 射禮와 救蝕儀를 시행하면서 의절에 약간의 차이

<sup>84) 『</sup>國朝五禮儀』「嘉禮」王世子與師傅賓客相見儀

<sup>85) 『</sup>國朝續五禮儀』「嘉禮」王子君師傳相見儀

<sup>86) 『</sup>國朝續五禮儀』「吉禮」拜大院君祠宇儀; 拜毓祥廟儀; 拜昭寧墓儀

<sup>87)</sup> 왕실의례가 단순히 왕실내부의 의례가 아니라는 점은 당시의 의례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 예를 들어 진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빈의 위차를 어디에 둘지를 놓고 영조와 신하사이에 논의가 있었다. 가족 내부로 봤을 때는 현빈이 長子婦어서 왕세자빈 보다 앞에 있어야 했다. 그러나 현빈은 왕세자와 列坐할수 없었다. 결국 현빈의 순서는 왕세자빈 다음이 된다.(『승정원일기』영조 20년 9월 5일 기묘.)

<sup>88)</sup> 사친의 사우와 묘에 대한 의례는 경종 대에 경종의 생모인 옥산부대빈의 사우와 묘에 대한 의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오례의』에 실리지 않았다. 반영된 것은 영조의 생모인 숙빈최씨의 사우와 묘에 관한 의례뿐이다.

<sup>89) 『</sup>國朝續五禮儀』「吉禮」拜毓祥廟儀; 拜昭寧墓儀.

가 생기게 되었다. 영조는 이를 「고이」편에 반영했을 뿐 아니라 射禮는 大射禮라는 이름으로, 救蝕儀는 親臨救蝕儀라는 이름으로 개칭하여 『속오례의』에 수록하도록 했다.90) 이외에도 『오례의』에 있었던 의례들이 영조가 직접 의례를 행한 뒤에 다른 이름으로 『속오례의』에 실렸다. 대표적인 예는 親臨傳香祝儀, 親臨頒敎陳賀儀 등이 있다.91)

영조가 자신이 시행한 의례를 『속오례의』에 수록하려고 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영조 스스로 이점에 대해 직접적으로 거론한 사례가 있다. 영조는 1744년(영조20)에 기로소에 들어가면서 교서를 반포하며, "七廟에 告由하여 明禋를 하여, (이를) 五禮儀 에 기록하여 후세에 드리운다."라고 하였다.92)(괄호는 필자) 이교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영조는 자신이 행한 의례를 후세에 남기고자 하였다.

『속오례의』는 국왕관련 의례의 전범이 되었다. 따라서 『속오례의』가 가지고 있는 국왕에 대한 규정력은 강력했다. 영조는 자신의 친림의례를 단순히 전례로 남긴 것이 아니라 국전인 『속오례의』에 반영하여 후세의 왕들로 하여금 전범으로 삼게 하고자 한 것이다.

<sup>90) 『</sup>國朝續五禮儀』「軍禮」

<sup>91) 『</sup>國朝續五禮儀』「吉禮」親臨傳香祝儀;「嘉禮」臨頒教陳賀儀

<sup>92) 『</sup>영조실록』 권60, 20년 9월 10일 갑신. 告七廟而修明禋 載五禮

#### 제4장 英祖代 國家儀禮書와 복제문제

#### 제1절『國朝續五禮儀』의 복제와 왕위계승

『속오례의』의 편찬이 처음 제기된 이유 중 하나는 국상의 복제를 정리할 필요성 때문이었다.93) 국상 복제는 薨逝한 국왕과 남아있는 자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현종대 慈懿대비(장렬왕후)의 복제는 효종과 인조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는 효종의 정통성에 관계되어 단순한 禮論으로 끝나지 않았다. 효종을 嫡長子로 볼 것인가 衆子로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남인과서인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예송논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국상복제에 관한 명확한 전범이 없었기 때문이다.94) 왕실의 복제를 기록한 『오례의』에서조차 왕대비와 대왕대비의 복제가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왕실의 복제는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17세기의 예송논쟁을 거친 후 이를 정리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것은 『속오례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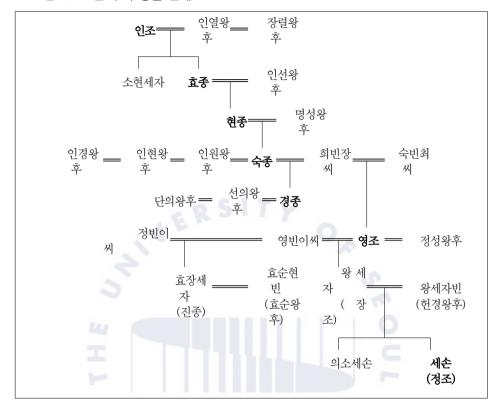
<sup>93) 1713</sup>년(숙종39, 계사년)에 숙종은 경연에서 『예기』 曾子問편을 보다가 이전의 복제 가 잘 못된 것을 지적하고 복제를 개정하였다. 그 내용은 以日易月制를 폐지하고, 卒哭練祭 후 상복 강화하는 것이었다. (『승정원일기』숙종 39년 10월 9일 계미; 『숙종실록』 권55, 40년 9월 24일 임술.)

숙종 대에 개정된 복제는 1740년(영조16)에 윤양래가 변화된 복제를 책으로 반포할 것을 주청하였다. 이를 듣고 영조는 『오례의』를 증수하게 하였다.(『승정원일기』영조16년 6월 3일 임신) 숙종이 개정한 복제는 『속오례의』에 반영되었다.

지두환은 선조대부터 영조대까지의 복제 변동을 규명하였다. (지두환, 2005, 「朝鮮後期 國喪儀禮 變遷 -卒哭 練祭 前後 喪服의 변화를 중심으로-」『韓國學論叢』 27, 國民大 韓國學研究所)

<sup>94)</sup> 실제로 왕실의 『오례의』와 『경국대전』에서도 왕실 관련 구체적인 복제에 대한 규정은 五服을 통해 그 대강이『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규정이 완전하지 않았다. 『경국대전』의 아들에 대한 복제는 장자와 차자를 구별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며느리에 대한 복제는 長子婦와 衆子婦를 구분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 <그림 1> 조선 후기 왕실 관계도



『속오례의』「흉례」國恤服制에서는 대왕을 위한 복제[爲大王服制], 왕대비를 위한 복제[爲王大妃服制], 왕세자를 위한 복제[爲王世子服制], 왕세자빈을 위한 복제[爲王世子嬪服制]를 별도로 수록했다. 〈표 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속오례의』에는 왕비를 위한 복제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왕세자빈을 위한 복제에서는 왕대비·대왕대비가 입는 服이 없고, 왕대비를 위한 服에서는 왕세자가입는 服이 없다. 또한 『속오례의』에는 왕세자와 왕세자빈를 위한 복제가 같은 등급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이후에 있을 국상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95)

『속오례의』에 복제가 정비되면서 이렇게 빠진 항목이 생기고, 일관되지 않은

<sup>95) 1751</sup>년 현빈의 상이 발생했을 때 『속오례의』를 참고하여 영조가 대공복을 입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1년 뒤 1752년에는 영조의 복제가 기년으로 변경되었다. (『영조실록』 권74, 27년 11월 14일 병자; 『영조실록』 권77, 28년 7월 24일 임오.)

< エ 1> 『國朝續五禮儀』의 服制

복제종류	신분별 복제		해당국상별 해당인물	
	신분	복	숙종 상	경종 상
爲大王服制	왕세자	斬衰三年	경종	영조
	왕비	斬衰三年	인원왕후	선의왕후
	왕대비	齊衰朞年	없었음	인원왕후
	왕세자빈	斬衰三年	선의왕후	정성왕후
	신분	복	선의왕후 상	
	전하	齊衰三年	영조	
爲王大妃服制	왕비	齊衰三年	정성왕후	
	대왕대비	齊衰朞年	인원왕후	
	왕세자빈	齊衰朞年	현빈	
2	신분	복	효장세자 상 영조 정성왕후	
La constitue de la constitue d	전하	齊衰朞年		
     爲王世子服制	왕비	齊衰朞年		
	왕세자빈	斬衰三年	현빈	
	대왕대비	緦痲	인원왕후	
	왕대비	大功	선의왕후	
	신분	복	단의왕후 상	
-	전하	齊衰朞年	숙종	
爲王世子嬪服制	왕비	齊衰朞年	인원왕후	
	왕세자	齊衰朞年	경종	

#### 『國朝續五禮儀』國恤服制條)

(출전 :

의례가 실린 이유는 『속오례의』의 편찬 원칙과 관계가 깊다. 『속오례의』의 범례에는 실제로 행한 의례를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96) 따라서 1713년(숙종39)에 복제를 개정한 이후97) 1744년(영조20)까지 왕비의 상이 없었

<sup>96) 『</sup>國朝續五禮儀』「凡例」

一 續編儀節 皆以講行 年代及聖教 附註之以見 繼述之義 創修之原「若無考者闕」

<sup>97) 『</sup>國朝續五禮儀』「흉례」국휼복제.

<sup>○</sup>肅宗癸巳 講會子問 因以我朝君臣服制 有所未盡 遂命一復古例 以洗漢唐千古之陋

기 때문에 해당 복제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영조는 『속오례의』를 편찬하면서 자신의 권위와 정통성을 강화하려고 하였고, 친림의례들을 『속오례의』에 수록하여 왕권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繼志述事를 표방하여 숙종의 전례를 따르며 국왕의 정통성을 강화해 갔다. 재위초반에 영조가 경종과 숙종의 후계자를 자처하던 것과 달리 재위 후반으로 갈수록 자신을 숙종의 후계자로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98)

그러나 『속오례의』의 편찬원칙과 각각의 국상이 가지고 있었던 특수한 관계때문에 영조와 경종·숙종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없었다. 영조는 경종을 종묘에서 "皇兄"이라 부르며 부자관계가 아닌 형제관계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속오례의』 國恤服制 爲王世子服에는 왕대비(선의왕후)가 조카인 왕세자(효장세자,英祖長子)를 위해 손자를 위한 복을 입었던 것이 반영되어 있다. 이럴 경우 영조와 경종은 형제관계가 아닌 부자관계가 된다.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 따른 명확하지 않은 복제가 『속오례의』에 수록되었다. 게다가『속오례의』의 복제만을 본다면 경종의 위치는 숙종의 적장자이자 영조의 아버지로 설정된다.

### 제2절『國朝喪禮補編』과 정통성

『속오례의』의 복제는 영조의 정통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했다. 또한 왕실구성원의 복제를 완비하고 있지도 않았다. 게다가 『속오례의』의 편찬 이후에도여러차례 국상이 있었기 때문에 복제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99) 결국『속오례의』가 완성된지 8년만에 『국조상례보편』이 만들어졌다.100)『국조상례

<sup>98)</sup> 임민혁, 2006, 앞의 글; 윤 정, 2007, 앞의 글.

<sup>99)</sup> 영조의 맏며느리인 현빈은 1751년에, 영조의 맏손자인 의소세손은 1752년에, 영조의 부인 정성왕후와 숙종의 계비 인원왕후는 1757년에 승하하였다.

<sup>100) 『</sup>국조상례보편』成服條에서는 『속오례의』와 달리 복제들을 본문에 적고, 이를 다시 횡간에 표 형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때 대왕대비 복제는 기록하지 않고, 이후 왕세손 복제, 왕세손빈 복제, 친자 및 문무백관 복제가 다 횡간에 수록되어 있다.

보편』은 현빈과 懿昭世孫의 상을 반영하여 金在魯가 1752년(영조28,壬申)에 편 찬하였다. 이후 1757년(영조33,戊寅)에 왕비(정성왕후)와 대왕대비(인원왕후)의 국 상을 추가로 반영하여 洪啓禧가 증수하였다.



<표 2>『국조상례보편』에 나타난 복제

신분 국상종류	王大妃	殿下	王妃	王世子	王世子嬪
大喪	齊 衰 三		斬 衰 三	斬 衰 三 年	斬 衰 三 年
內喪	J E	齊 衰 三	齊 衰 三	齊衰朞	齊衰朞年
內喪先在	齊衰朞	齊 衰 杖		齊衰杖	齊衰朞年
小喪	大功九月	斬 衰 三 年 ○ 日 適 者 斬 衰 三 年 則 爲 次 適 者 齊 衰 暮 年 101)	齊 衰 三	100	斬 衰 三 年
小內喪	小功五月	齊 衰 朞	齊 衰 朞	齊衰朞	

(출전:『국조상례보편』 成服條 橫間)

『국조상례보편』의 특징은 우선 대왕대비의 복제가 없다는 점이다. 戊寅本 『국조상례보편』은 왕비(정성왕후)와 대왕대비(인원왕후)의 국상이 끝난 뒤에 이

<sup>101)</sup> 見受教 ○爲小內喪 服制及 王大妃 王妃爲之服 並以此例 旁照磨鍊(『국圣상례보편』 成服 횡간내의 註)

를 반영하여 개정한 책이다. 그런데 『속오례의』에 있었던 대왕대비의 복제가『국조상례보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왕대비(인원왕후)는 영조와 모자 관계였다. 또한 국왕인 영조는 이미 숙종을 "皇考"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대왕대비와 모자의 의리가 있다는 사실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왕위 계승에는 숙종과 영조 사이에는 경종이 있었고, 이런 이유로 영조가 즉위하자 경종비 선의왕후는 왕대비가, 숙종비 인원왕후는 대왕대비가 되었다. 따라서 왕비(정성왕후)의 상에서 대왕대비의 복제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대왕대비(인원왕후)가 왕비(정성왕후)의 상에 복을 입을 때, 왕위계승을 중시하여 영조를 孫子로 본다면 왕비(정성왕후)를 위해 小功服을 입어야했다. 만약 혈연관계를 중시한다면, 영조를 衆子로 보아 왕비(정성왕후)의 상에 大功服을 입어야 했다.

이와 같이 대왕대비의 복제는 영조와 숙종의 관계를 나타내 주었다. 대왕대비의 복제에서는 경종의 위치를 숙종의 長子이자 嫡統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숙종과의 직접적인 관계(부자관계)를 강조하고 있던 영조에게는 정통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1757년(영조33), 왕비(정성왕후)의 상에 대왕대비의 복제는 기년복으로 정해지게 되었다.102) 이것은 정성왕후와 인원왕후를 왕비와 왕대비의 관계로 설정한것이다. 따라서 영조를 숙종의 적장자로 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조상례보편』에서 이러한 복제를 반영하여 왕비를 위한 복으로 기년복의 服制를실었다. 대왕대비가 입는 복제가 사라지고 왕대비가 왕비를 위해 입는 복제만이남은 것이다. 이는 영조가 인원왕후를 국왕의 母后라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왕대비의 위치로 정하고 왕비를 위해 기년복을 입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조상례보편』이『속오례의』와 다른 특징은 국왕과 왕세자의 복제가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국조상례보편』에서 왕대비는 국왕이 嫡長子, 嫡次子, 庶子인지를 불문하고 적장자를 위한 복(齊衰三年)을 입게 되어있다.(〈표 2〉이 참조)이것은 왕위에 오르면 모두 적장자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복제는 국왕의 정통성을 강화 하는 효과가 있었다.

<sup>102) 『</sup>영조실록』 권89, 33년 2월 20일 임오.

이와 마찬가지로 小喪에서도 長子와 次子의 복을 분리하여 논란거리를 없애고 "適"字를 명시하여 왕세자의 지위에 오르면 모두 適子로 대우하였다. 왕세자는 숭통을 이을 신분이므로 왕세자를 위해 父와 母는 적장자를 위한 복인 斬衰三年의 복과 齊衰三年의 복을 입었다. 그리고 만약 적장자를 위한 복제가 시행되었으면 다음 왕세자를 위해서는 嫡次子를 위한 기년복을 입었다103). 숭통을 중시하고 동시에 정통성의 문제도 논란의 여지를 없앤 것이다. 『국조상례보편』에 의하면 왕세자가 嫡次子로 왕위에 오른다고 해도 왕대비는 국왕의 상에 대해 적장자를 위한 복인 齊衰三年 服을 입어야 한다. 이 때문에 차자로 왕위를 계승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국조상례보편』에서는 국왕 및 왕세자의 지위가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거론한 것처럼 복제는 정통성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문제였다. 영조는 의례를 강화하고 자신이 행한 의례들을 國典에 반영함으로써 정통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길례·가례에서는 왕세자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복제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한 정비를 하지 못했다. 『속오례의』에서는 편찬 원칙상 복제를 경우별로 정리하지 못하고 실제로 행했던 일을 그대로 적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영조는 자신의 정통성을 경종이 아닌 숙종에게서 가져오길 원했다. 이후 선의왕후가 죽고 인원왕후가 승하한 뒤 『국조상례보편』의 정비를 통해서 이러한 영조의 의도가 완성을 보게 된 것이다.

<sup>103)</sup> 왕비와 왕대비의 복제는 국왕의 복제를 준용하였다.

#### 제5장 맺음말

조선은 禮治를 표방한 국가였고, 국가의 의례는 사회적·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국가의 기틀이 완비된 성종 대에는 조선시대 成憲인 『경국대전』뿐만 아니라 국례를 정리한 『오례의』도 편찬되었다. 『오례의』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진행되어, 국초 國家禮制가 어떻게 정비되고 확립되어 갔는지에 대해 그대강이 밝혀졌다. 그러나 『오례의』를 증수한 『속오례의』는 당대에 國典으로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선행 연구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다. 따라서이 논문에서는 『속오례의』가 가지고 있는 國典으로서의 위상과 함께 편찬자인 영조의 의도를 고찰하였다.

2장에서는 『속오례의』가 가진 위상을 다른 國典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오례의』가 가진 규정력이 어떠하였는지를 『경국대전』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두 책은 모두 국왕과 신료에게 전례보다 강고한 규정력을 가지고 있었다. 더불어 영조대에 국왕과 신료가 『오례의』를 반드시 따라야하는 國典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속오례의』가 『오례의』로인식된 것을 정조대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같은 시기에 편찬된 『속대전』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속오례의』와 『속대전』은 두 책의 전범인 『오례의』와『경국대전』과 같은 관계로 설정되어 있었다. 국가의례는 이를 담당하는 국왕의 권리와 의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였다. 『오례의』에는 『경국대전』에 수록되지 않은 국왕의 의례를 담고 있어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이는 『속오례의』와 『속대전』역시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영조대에 국가 재정비 작업이 진행될 때 두 책이 함께 증수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3장에서는 국전인 『속오례의』의 내용을 파악하여 그 구성과 전체적인 특징을 확인하였다. 『속오례의』는『오례의』에 비하여 왕실구성원(대왕대비·왕대비등)의 의례가 강화되었다. 그리고『오례의』와 달리 의례를 언제 행했는지 어느

때에 하교했는지를 기록하였으며, 변경된 내용을 정리한「고이」가 추가되었다. 또 다른 특징은 숙종대 이후의 의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영조가 친림한 의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영조는 의례를 정비할 때 숙 종에 대한 繼志述事를 표방하여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고히 하려고 하였다.

『속오례의』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친림의례는 일반 국가의례보다 더 중요한의례로 취급되었다. 영조는 친림의례의 시행을 통해 君臣分義를 강화하고 성리학적 명분을 취하였다. 또한 신료들에게는 왕권의 위상을 보였다. 國典인 『속오례의』에 왕실가족의 의례를 확대하여 왕실의 권위도 높였다. 그러나 이 의례들 역시 영조와 관련이 깊은 의례가 중심이었다. 영조는 『속오례의』에 자신이 친행한의례를 반영하여, 스스로를 후세 국왕들의 전범이 되고자 하였다.

4장에서는 영조가 의도했던 왕권과 정통성 확립 문제가 실제로 『속오례의』의 예제들을 통해 완전히 정립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정통성에 가장 민감한 항목인 복제를 분석하면 경종 비인 선의왕후가 왕대비로 있었고, 선의왕후가 살아 있는 동안의 복제에서는 영조와 숙종을 곧장 연결시키는데 무리가 있었다. 『속오례의』의 편찬 원칙은 의례를 언제 행했는지 어느 때에 하교했는지를 적고, 실행했던 의례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왕후의 복제만을 제외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것은 『속오례의』를 찬집하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후 『국조상례보편』을 새로 만들면서 이 문제는 보완되었다. 여기에 영조 자신과 대왕대비 인원왕후를 국왕과 왕대비로 설정하여 정성왕후를 위한 인원왕 후의 복제를 기년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정리하면서 왕실복제에서 예송으로 까지 불거져 나왔던 승통과 적통문제를 법전에 명시하여 논란의 가능성을 종식시 키고 국왕의 권위를 확고히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속오례의』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國喪때의 服制를 실제 행해졌던 복제와 비교하였다. 이후에 편찬된『국조상례보편』의 복제와의 차이점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결과만을 살폈을 뿐 『속오례의』에 반영된 복제가 채택되기까지의 논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였다. 예송논쟁에서 각

각의 주장이 달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조대의 국휼복제도 신료들과 국왕의 입장이 모두 같지는 않았다. 따라서 각각의 정치 주체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떤 예제를 적용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예송논쟁 이후의 예론의 변화와 예론에 대한 파장이 17세기와 달랐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적·사회적인 변화도 아울러 드러내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논문은 영조대의 국가의례만를 다루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국가의례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종대의 『국조오례의』뿐만 아니라, 정조대의 『國朝五禮通編』·『春官通考』그리고 고종 때의 『大韓禮典』까지를 조망해야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작업은 조선시대의 예제뿐 아니라 정치·사상의 변화를 드러내고, 각각의 변화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다 선명하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표】 『국조속오례의』「흉례」소목 목록

속오례의항목	小 目	소목에 부기된 주
遷陵儀-凡十九儀	題紙榜儀	
〇今上辛亥遷長陵于	<b>啓陵儀</b>	發引下玄宮虞祭時望哭儀並同
○分上干么麼区医」	<b>啓陵時成服望哭儀</b>	
交河遵用顯宗甲寅遷	大王大妃成服望哭儀	王妃王世子嬪同
寧陵儀節而稍備馬	奉出梓宮儀	
	梓宮出安後設奠儀	
	梓宮詣丁字閣成殯儀	
	丁字閣成殯奠儀	倣原書朔望奠儀
	朝夕哭奠及上食儀	見原書凶禮*
	議政府率百官進香儀	見原書凶禮 *
1	梓宮加漆儀	上字書寫結裹儀同並見上*
	<b>啓殯儀</b>	見原書凶禮*
5	遣奠儀	無朝奠見原書凶禮 *
	發引儀	見原書凶禮*
Lu d	路祭矣	見原書凶禮*
	晝停所設奠儀	
工	新陵丁字閣成殯儀	
	遷奠儀	[본문]儀見原書見遷奠儀
	虞祭儀	[본문]儀見原書凶禮虞祭儀
莊陵復位儀-凡七儀	神主移奉時敏堂儀	•
肅宗己卯追復端宗大	諡冊諡寶內入儀	
	請諡宗廟儀	[본문]儀見原書淸諡宗廟儀
王位號時有此儀	上諡冊寶儀	[본문]儀見原書上諡冊寶儀
	立主奠儀	
	新主奉安明政殿儀	
	祔廟儀	[본문]儀見原書祔廟儀
溫陵復位儀	神主移奉爲善堂儀	倣莊陵復位儀
A L 习 土 泊 復 恕 数 丁	資政殿親行奉安祭儀	
今上己未追復端敬王	諡冊諡寶內入儀	倣莊陵復位儀下皆同*
后位號時有此儀	請諡宗廟儀	*
	上冊寶儀	*
	立主奠儀	*
	資政殿新主奉安儀	*
	<b>耐</b> 廟儀	*
느 이므 어ㅇㅇ ㅍㅋ /	[보무]은 註가 보무에 수록되어	시 시노 거이로 교기

<sup>\*</sup>는 원문 없음을 표기. / [본문]은 註가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를 표기.

### 참고문 헌

#### ○ 1차 사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國朝五禮儀』(국립중앙도서관 古貴6022-22, 奎174, 奎175, 奎1022)

『國朝續五禮儀』(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29-85, 奎1479, 奎26620)

『經國大典』(국립중앙도서관 한貴古朝33-26)

『續大典』(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33-8)

『國朝喪禮補編』(奎3940)

『別繼後謄錄』(奎12093)

黃胤錫(1729~1791)『頤齋亂藁』

#### ○ 단행본

이범직, 1991, 『한국중세예학사상연구 -오례를 중심으로-』, 일조각

고영진, 1995,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박현모, 2007, 『유교의 예치 이념과 조선』, 청계

이현진, 2005,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 4, 서울대학교 규장각 지두환, 1996, 『朝鮮前期儀禮硏究』, 서울대출판부

정옥자. 1998.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한영우, 2005, 『조선왕조의궤』, 일지사

\_\_\_\_ , 2007, 『꿈과 반역의 실학자 유수원』, 지식산업사

#### ○ 연구논문

- 강순애, 1982, 『朝鮮 英祖朝의 圖書編纂 및 刊行에 관한 書誌的 硏究』, 성균관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재모, 2003, 『조선시대 궁궐의 의례운영과 건축형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 축학과 박사학위논문
- 강신엽, 2001,「조선시대 大射禮의 施行과 그 運營」『朝鮮時代史學報』16호, 朝鮮時代史學會
- 김 혁, 2002,「조선후기 수령의 赴任의례」『朝鮮時代史學報』22, 朝鮮時代史學 會
- 김문식, 2007,「『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의 자료적 특징」『한국문화연 구』1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김백철, 2007,「조선후기 영조대『속대전』위상 재검토-「형전」편찬을 중심으로」『歷史學報』194,歷史學會
- \_\_\_\_\_ , 2008, 「조선후기 영조대 법전정비와 『속대전』의 편찬」『역사와 현실』68호, 한국역사연구회
- 김지영, 2005, 「조선시대 典禮書를 통해 본 御駕行列의 변화」『韓國學報』 120, 一志社
- \_\_\_\_\_ , 2008, 「조선후기 국왕 행차와 거둥길」 『서울학연구』30, 서울학연구소 박정자. 1974, 「國朝五禮儀와 그 續補編」 『숙대사론』8집
- 송재용, 2004,「儀禮와 政治-관·혼·상·제례를 중심으로-」『비교민속학』26집, 비교민속학회
- 송지원, 2008,「조선시대 음복연(飮福宴)의 의례와 음악」『공연문화연구』16집 우경섭, 2001,「영조 전반기(1724~1744)의 서적정책」『규장각』제24집, 서울대

- 학교 규장각 한국학원구원
- 윤 정, 2007, 「재위 전반(1725-1746) 영조의 군신관계 이해 -'군신분의'론의 적 용과 지향을 중심으로-」『한국사학보』29, 고려사학회
- 이 욱, 2006, 「조선후기 전쟁의 기억과 대보단(大報壇) 제향」『종교연구』42, 항국종교학회
- 이경구, 2004,「1740(영조16) 이후 영조의 정치 운영」『역사와현실』53권, 한국 역사연구회
- 이영춘, 2002,「조선후기 사전의 재편과 국가제사」,『한국사연구』118, 한국사연 구회
- 이왕무, 2006,「영조의 私親宮·園 조성과 幸行」『藏書閣』15,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현진, 2006, 「영·정조대 종묘 世室論과 왕실의 위상 강화」『朝鮮時代史學報』 38. 朝鮮時代史學會
- 임민혁, 2006, 「영조의 孝悌 논리와 私親追崇」『朝鮮時代史學報』39, 朝鮮時代史 學會
- 임혜련, 2003,「朝鮮 中·後期 왕의 혼례와 친영」『숙명한국사론』3, 淑明女大 韓國史學科
- 장동우, 2003,「『經國大典』 「禮典」과 『國朝五禮儀』 「凶禮」에 반영된 宗 法 이해의 특징에 관한 고찰」『韓國思想史學 』20. 韓國思想史學會
- \_\_\_\_\_ , 2005,「『續大典』「禮典」과『大典會通』「禮典」에 반영된 '17세기 전 례논쟁[禮訟]'의 논점에 대한 고찰」『한국실학연구』9. 한국실학연구회
- 장재천, 1997, 「조선 시대 성균관의 사회 교육 연구」 『사회교육학연구』 3권 2호, 한국평생교육학회
- 정긍식, 2005,「續大典의 위상에 대한 小考 '奉祀 및 立後'조를 대상으로 -」 『법학』46권 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_\_\_\_\_ , 2007, 「법서의 출판과 보급으로 본 조선사회의 법적 성격」『법학』48권 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호훈, 2004, 「18세기 전반 탕평정치의 추진과 『속대전』의 편찬」『한국사연

구』127. 한국사연구회

- 조재모, 2005, 「英·正祖代 國家儀禮 再整備와 宮闕建築 朝賀儀式을 中心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21권 12호, 대한건축학회
- 지두환, 2005,「朝鮮後期 國喪儀禮 變遷 -卒哭 練祭 前後 喪服의 변화를 중심으로-」『韓國學論叢』27, 國民大 韓國學硏究所
- 최영준, 1989,「조선시대 한양의 郊地域」『문화역사지리』창간호, 한국문화역사 지리학회
- 함재학, 2004, 「경국대전이 조선의 헌법인가?」『법철학연구』7권 2호, 한국법철 학회
- 홍순민, 1998, 「조선 후기 법전 편찬의 추이와 정치운영의 변동」『한국문화』21 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Abstract]

# The Compilation of "Kukcho-Sok-Oryeoi" and the Status of Kingship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Yeongjo(英祖)'s intentions in decreeing "*Kukcho-Sok-Oryeoi*(國朝續五禮儀)" through an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special features this book of statutes.

"Kukcho-Sok-Oryeoi(國朝續五禮儀)" is the book of rites of legitimacy which was published at the end of the Choson Dynasty. These statutes originally derived from "Kukcho-Oryeoi(國朝五禮儀)", which was compiled under King Seongjong(成宗)'s period. As a result, "Kukcho-Sok-Oryeoi(國朝續五禮儀)" reflects the change from the King Seongjong(成宗)'s period to King Yeongjo(英祖) period.

In general, previous studies have analyzed some part of "Kukcho-Sok-Oryeoi(國朝續五禮儀)". However, this paper concentrates on "Kukcho-Oryeoi(國朝五禮儀)"own intrinsic meaning, through an analysis of its special features and a comparison with other similar rites.

Firstly, "Kukcho-Oryeoi(國朝五禮儀)" had the same means of application as "Gyeongguk-Daejeon(經國大典)", and Kukcho-Sok-Oryeoi(國朝續五禮儀)" also had the same status as "Kukcho-Oryeoi(國朝五禮儀)". Furthermore, in the same way that "Kukcho-Oryeoi(國朝五禮儀)" and "Gyeongguk-Daejeon(經國大典)" were decreed during the same period, "Kukcho-Sok-Oryeoi(國朝讀五禮儀)" and "Sok-Daejeon(續大典)" were also decreed during the same period.

Unlike *Gyeongguk-Daejeon*(經國大典)", "*Kukcho-Oryeoi*(國朝五禮儀)" included the king's rites. Therefore, in revising previous statutes,

"Kukcho-Sok-Oryeoi(國朝續五禮儀)" also had to contain matters for king. In "Kukcho-Sok-Oryeoi(國朝續五禮儀)", it mainly contained rite after 숙종대. It dealt with the case of the queen's and king's mother for the first time, and all matters were reinforced by reference to historical precedent. As a result, rules of conduct were stricter for royal members.

In particular, the inclusion of the most rigid disciplines for King Yeongjo(英祖) himself were a significant aspect of "Kukcho-Sok-Oryeoi(國朝續五禮儀)". This is the due to the fact that such rules enabled him to demonstrate his power and motivate his retainers to show fidelity. Moreover, King Yeongjo(英祖) intended to further underscore his legitimacy by recording his rules for posterity.

The dress regulation for state funerals was the one of most controversial disciplines, because it demonstrated the royal family's relationship with previous king. Queen Sunui(宣懿王后) was King Yeongjo(英祖)'s sister-in-law, and a wife of the previous king. She was also the king's mother's first daughter-in-law. So what she wore during the funeral indicated relationship between King Yeongjo(英祖) and previous kings and was determined by the genealogy of King Yeongjo(英祖). In the case of

"Kukcho-Sok-Oryeoi(國朝續五禮儀)", 宣懿王后wore the funeral dress of a grandson for her nephew Crown prince Hyoujang(孝章世子) and Queen Inwon(仁元王后) dressed as the first daughter-in-law for Queen Sunui(宣懿王后). This presented a crucial matter forKing Yeongjo(英祖), as to whether he was successor either King Gyeongjong(景宗) or King Sukjong(肅宗).

After accomplishing "Kukcho-Sok-Oryeoi(國朝續五禮儀)", there was the decree of "Kukcho-Sangryeo-Bopyen國朝喪禮補編)", which included only rites for the royal family. In comparison with "Kukcho-Sok-Oryeoi(國朝續五禮儀)", "Kukcho-Sangryeo-Bopyen國朝喪禮補編)" has two major charters. Firstly, the

dress rules for the funeral for previous king's grandmother was abolished. The king's grandmother used to wear funeral dress for a year for a queen, while in "Kukcho-Sangryeo-Bopyen國朝喪禮補編)" was recorded that a living previous queen did it. This indicates that King Yeongjo(英祖) was the successor of King Sukjong(肅宗). Secondly, funeral dress discipline was enforced in both king's funeral and prince's. This was meant to preclude argument about the successor, regardless of whether this was the second son or not the first queen's son.

"Kukcho-Sangryeo-Bopyen國朝喪禮補編)"

This report analyzes major features of "*Kukcho-Sok-Oryeoi*(國朝續五禮儀)" by comparing it with "*Kukcho-Oryeoi*(國朝五禮儀)" and establishes it's great influence in the palace, equal in to stature that of "*Sok-Daejeon*(續大典)". In this way, King Yeongjo(英祖) intended to revise the book to reinforce of a royal authority.

keyword: Kukcho-Sok-Oryeoi, Kukcho-Oryeoi, Kukcho-Sangryeo-Bopyen,
King Yeongjo, Legitimacy, ceremony, King's attending ceremony,
five degrees of mourning, Gyeongguk-Daejeon, Sok-Daejeon,